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김승원 · 한병도 · 민병덕
윤후덕 · 이성윤 · 이주희
장종태 · 서미화 · 김동아
김종민 · 박선원 · 문금주
박용갑 · 박범계 · 이건태
김남근 · 김용만 · 진선미
이병진 · 박해철 · 서영교
이재강 · 최혁진 · 최민희
양부남 · 윤준병 · 김문수
박지원 · 추미애 · 최기상
김 현 의원(31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

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

-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되는 과정이나 내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
 -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선택한 정보(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공유·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자. 그 밖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시행기관”이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방송·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등) ① 국가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6. 거짓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 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⑥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 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원과 전문강사 등 각 인력 유형별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국무총리 및 주관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